

## 물류설비인증제도 개선 주요내용



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 
사무관 한 상 현

본 원고는 지난 5~6월 새롭게 개정된 물류설비인증요령과 물류설비인증규격의 주요내용으로 개선된 인증요령과 인증설비규격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원 사무관이 기고해 주셨습니다.

-편집실 -

### 물류표준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

#### I. 배경

- 지식경제부(기술표준원)는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증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'09. 5.27일 「물류설비인증요령」을 개정 하였으며,
- 또한, 이와함께 물류설비 인증품목 확대를 통하여 물류산업에서 일관수송체계(ULS)를 확산시키고 현장여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험·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'09. 6.30일 7종의「물류설비인증규격」을 신규제정하고 기존 34개 인증규격을 개정고시 하였음

## II. 물류설비인증요령 개정 주요내용

(기술표준원고시 제2009-0241호, '09.5.27)

- 민간기관에 이관('08.9)한「물류설비인증제도」의 효율적 운영 지원
  - 인증기관등의 각종 행정보고 축소 및 불 필요한 신청서류 등 간소화
  - 물류업체의 부담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완화
- ① 인증기관의 행정보고 축소(제9조제7항, 제27조제2항 등)
- 현행) '물류설비인증심의결과', '인증심사결과 보고' 등 8종  
 ⇒ 개정) '인증서발급결과', '정기검사결과보고' 2종으로 축소  
 ※ 개정사유 : 보고 필요성이 적거나 유사한 보고 6종 폐지  
 (물류설비인증심의결과, 인증심사결과, 인증서재교부, 이의신청조사결과, 시정결과, 인증설비사용실적 보고)
- ② 물류설비성능검사 중복규정 정비(제22조)
- 현행) '성능검사절차 및 방법'이 제22조와 제25조(별표4)에 중복규정  
 ⇒ 개정) 성능검사는 '별표4'의 '성능검사절차 및 방법'을 적용하도록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조문정리  
 ※ 개정사유 : 성능검사의 절차 등이 중복 · 상충 되어 있어, 신청업체 및 인증기관에서 업무처리에 불편 초래
- ③ 인증신청 구비서류 간소화(제23조)
- 현행) 물류설비 인증신청시 구비서류 8종(법인등기부 등)  
 ⇒ 개정) '물류설비의 설명서' 등 3종으로 축소  
 ※ 개정사유 :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장심사시 확인 가능한 서류(법인등기부 등 5종)는 제외하여 구비서류 최소화
- ④ 인증시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면제 확대(제25조, 별표4)
- 현행) KS인증 설비의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일부생략  
 ⇒ 개정) 신청설비가 타법령 및 제도등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설비인 경우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 면제  
 ※ 개정사유 : 동일설비·품목에 대한 중복 현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방지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(예 : KS인증, 안전인증, 차량형식 승인 등)
- ⑤ 정기검사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(제32조, 별지 제11호, 제11호의2)
- 현행) 정기검사(현장심사 및 성능검사)는 연 1회 실시. 단, 2년마다 인증기준 총

족 인증서류 제출할 경우 정기검사 같음

⇒ 개정) 설비인증은 성능검사성적서 확인만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현장심사 병행, 경영시스템인증의 정기검사는 3년 주기로 완화

※ 개정사유 : 물류설비인증은 일관수송체계상의 각 설비의 적합성이 핵심사항인바, 1년주기 정기검사는 과도한 규제로 정기검사방법 및 주기완화 필요(예 : KS인증 정기검사 주기 3년 등)

○ 현행) 정기검사 신청시 구비서류는 '설비인증'이 8종, '경영시스템 인증'이 9종 (제3항, 별지 제11호, 제11호의2)

⇒ 개정) 설비성능검사 성적서(또는 인증서) 등 3종으로 축소

※ 개정사유 : 정기검사 구비서류는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, 실적보고서 등 필요성이 적거나 현장심사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

⑥ 불합리한 처분규정 폐지(제35조)

○ 현행) 인증설비가 인증규격등에 맞지 아닌한 경우 표시제거 명령 등 처분 조치  
⇒ 개정) 삭제

※ 개정사유 :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제처에서 삭제요구한 '행정규칙 정비대상' 임

⑦ 과도한 인증취소 요건 완화(제36조)

○ 현행)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, 부도 및 소재불능, 정기검사 미수검, 정기검사 미신청 2회 및 표시제거 명령 미이행등이 인증취소 사유

⇒ 개정) 취소요건을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와 인증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, 정기검사 미수검 등은 시정명령 등 처분절차를 두어 완화

- 정기검사 미수검 등 단계별 처분절차 등은 '별표 5'(위반사항 처분기준)에 명시하여 반영

※ 개정사유 :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한정, 정기검사 미신청시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규정으로서는 법제처에서 삭제요구한 '행정규칙 정비대상' 임

⑧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신설(제38조제7항)

○ 현행) 물류설비인증서 재발급시 수수료 없음

⇒ 신설) 인증업체 과실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 재발급 하는

경우 수수료 부과 (국문 인증서 2만원, 영문인증서 3만원)

※ 사유 :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실비 부과  
(예 : KS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3만원)

㉠ 인증업체 자료제출 의무 폐지(제41조제1항)

- 현행) 인증업체는 매년 정기검사시 인증설비사용실적 등을 인증기관에 제출  
⇒ 개정) 인증설비 공급·사용실적 등 자료는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만 요구토록 제한
- ※ 개정사유 : 인증업체의 행정보고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필요성이 적은 보고 의무 폐지

### III. 물류설비인증규격 제·개정 주요내용

(기술표준원고시 제2009-0319호, '09.6.30)

#### 1. 제정안 주요내용 : 7종

- 물류 및 유통업에서 적재·보관·운송에 주로 사용하는 품목을 발굴
- 물류업계 및 현장에서 요청이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규격 제정
- 유닛로드시스템 통칙에 부합하는 치수 및 형태를 중심으로 규정

① 메시 파렛트(Mesh pallets)(LS T 10010)

- 구조 : 가로장 또는 세로장 금속망을 갖춘 파렛트
- 치수 : 크기 1100 x 1100, 높이 2200 이하
- 최대적재하중 : 1톤
- 용도 : 농산물 등 환풍이 요구되는 상품의 운송에 사용

② 보관창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(LS T 10011)

- 적용범위 : 보관, 적재 및 입출고 작업을 위한 시설 기준
- 보의 높이 : 6~8m(단층), 5~7m(다층)
- 기둥간격 : 7.5m 이상
- 출입구 : 나비 3.5m, 높이 4m 이상
- 통로나비 : 지게차 적재대칭지름 + 200~350mm

③ 인테이너 파렛트(Intainer pallets)(LS T 10012)

- 구조 : 적재판 모서리에 기둥을 설치하여 상부를 연결

- 치수 : 크기 1170 x 1170등 3종, 높이 800~1600등 8종
- 최대적재하중 : 1.05톤
- 용도 : 농·수·축산물 냉동·냉장창고 보관설비로 사용

④ 일관수송용 상자형 파렛트(LS T 02026)

- 구조 : 측면이 밀폐되거나 접철 또는 탈착이 가능한 파렛트
- 치수 : 크기 1100 x 1100등 3종, 높이 2200
- 최대적재하중 : 1.0톤
- 용도 : 자동차 및 중장비의 부품, 농산물 운송에 사용

⑤ 파렛트 서포트(Pallets Supports)(LS T 02009)

- 구조 : 파렛트판 각모서리에 고정형 기둥을 설치후 상부연결
- 치수 : 크기 11700 x 1170등 3종, 높이 800~1600 등 9종
- 최대적재하중 : 1.05톤
- 용도 : 농·수·축산물 냉동·냉장창고 보관설비로 사용

⑥ 리프트게이트(The Motor Tailgate Lift)(LS T 10013)

- 구조 : 플레이트 재질은 강판,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
- 치수 : 플레이트 크기 2370 x 1200등 2종, 두께 3.2t
- 적재하중 : 0.8~1.05톤
- 용도 :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미에 장착하여 바닥면과 적재함과의 높이를 조정해 주는 장치

⑦ 플렉시블 컨테이너(LS T 03003)

- 구조 : 접을 수 있는 유연성 재료를 사용한 자루모양의 형태
- 치수 : 지름 1100등 3종(원형), 변길이 1140 등 4종(각형), 높이 800~1600 등 11종
- 적재하중 및 용적 : 1.0톤 이하, 1000 L이하
- 용도 : 밀, 콩, 수지원료 등 과립 및 분말제품 보관 및 유통

## 2. 인증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: 34 종

- LS 규격의 이해를 돕고 알기쉽게 규격별로 그림(도형)을 삽입
- 현실적으로 측정·시험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적은 항목은 삭제
- 성능과 품질 평가가 요구되는 품목은 검사 및 시험기준 등을 보완
- 성능검사 샘플수량 최소화, 평가의 객관성 위해 평가지표 신설

1. 외부포장용 골판지 상자(LS A 01531)
2. 강제 오픈 드럼(LS A 01603)
3. 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용기(LS A 01613)
4. 유동 랙(LS A 01644)
5. 파렛트 랙(LS A 02163)
6. 적층 랙(LS A 02163-1)
7. 드라이브 인 랙(LS A 02163-2)
8. 유닛 로드용 수직 컨베이어(LS B 06711)
9. 다단식 목재상자(LS A 10001)
10. 롤러 컨베이어(LS B 06181)
11. 벨트 컨베이어(LS B 06182)
12. 금속제 평 파렛트(LS A 01052)
13. 파렛트 화물적재기(LS A 01623)
14. 크레인용 파렛트 행거(LS A 01638-1)
15. 플랫폼 랙 컨테이너(LS A 01704)
16. LS A 01705 : 오픈 톱 컨테이너
17. 국내 일반화물 컨테이너(LS A 01720)
18. 일관 수송용 목재 평 파렛트(LS A 2155)
19. 시트 파렛트(LS A 02166)
20. 상자형 파렛트(LS A 02167)
21. 플라스틱제 평 파렛트(LS A 02169)
22. 국제 일반화물 컨테이너(LS A ISO 1496-1)
23. 돌리 파렛트(LS A 10002)
24. 파렛트 트럭(LS B 06710)
25. 트럭용 광폭 적재함(LS R 00102)
26. 지게차(LS R 06013)
27. 화물자동차용 냉장·냉동 적재함(LS R 10003)
28. 화물자동차용 윈바디(LS R 10004)
29. 높이 고정식 운반차(전동차)(LS R 10005)
30. 자동 포장상자 성형공급기(제한기)(LS B 10006)
31.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 봉합기(테이핑기)(LS B 10007)
32. 파렛트 스트레칭 머신(랩핑기)(LS B 10008)
33. 포장 상자 결속기(밴딩기)(LS B 10009)
34. 적재,수송,수취 라벨용 바코드 및 2차원 심블(LS X ISO 15394)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- 그간 정부에서는 물류산업에서 표준의 이행·확산과 업계의 표준설비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인증제도(LS)를 도입('04. 7), 수송·배송 등 4개분야 34개 설비(품목)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왔으며,

물류설비인증 현황 ('08.12말 현재)

'04년도	'05년도	'06년도	'07년도	'08년도	'09. 6	합 계
8 업체 (13 설비)	86 업체 (156 설비)	12 업체 (21 설비)	15 업체 (29 설비)	3업체 (8 설비)	4업체 (4설비)	128 업체 (231 설비)

-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'08.9월 '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'을 '물류설비인증기관'으로 지정, 인증업무를 이관한 바 있음
- 이번 인증요령 개정과 인증규격 신규제정 및 개정 고시를 통하여 물류산업계에서 물류표준설비의 생산, 사용이 보다 더 활성화 되어, 포장·운송·하역·보관·정보 등 각 부문별 물류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표준화 이행을 촉진하고,
- 인증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,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완화, 인증품목의 확대 및 기준개정 등 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물류표준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정부에서는 향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대상 품목(설비)을 계속 발굴하고, 기존 인증규격중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등을 개정하는 등, 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하여 물류설비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